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경감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여 개별소비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0.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율은”을 “세율 및 그 한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35”를 “35. 다만,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

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u>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5. (생략)</p> <p>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u>35</u></p> <p>② (생략)</p>	<p>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u>세율 및 그 한도는</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35.</u> <u>다만,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